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

1. 提案理由

- 이 條例는 水道料金과 給水裝置 및 供給條件등 給水의 適正 管理 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1971. 6. 30 制定되었으나
- 水道法에서 條例로 規定하도록 委任된 法條項이 改正됨에 따라 上水道 給水條例에 附合하도록 條例를 改正하고
- 計量器 異常試險에 대한 現行 使用公差範圍를 上位法에서 定한 範圍內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合理的으로 調整코자 함.

2. 主要骨子

- 條例 第1條中 "水道法 第17條"를 "水道法 第23條"로 함
- 條例 第30條 第2項의 試險結果 "100分의 8을 超過하는 경우"를 試險結果 誤差가 "計量 및 測定에 관한 關聯上의 使用公差 範圍 를 超過하는 경우"로 改正

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수도법 제17조"를 "수도법 제23조"로 한다.

제3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경정하고 경정사용량 산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경정하기전 조정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환불 또는 추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(안)
제1조 (목적) 제17조	 제1조 (목적) 제23조-
-	
제30그 (수도계량기의 이공사원)	제30조 (수도개량기의 이상시험)
🛈 (यु हो)	① (헌행과 길음)
② 100분	② 계량
의 용상	및 측정에 관한 법령상의 사용 공차 범위
- 그 월분의 자	를 그 월분의 사용량을
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	- 경정하고 경정사용량 산출 방법은 시장이
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	따로 정한다 경정하기전 조정한 요금에
환부, 추정 또는 익월분요금에서 정산한	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환불 또는 추성
C}.	한다.
_ ③ - ④ (젱 략)	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	_